

감정평가서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건명	박영찬 외 1명 소유물건(2024타경35318)
감정서번호	T2024-07-2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태인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및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성숙

(인)

감정평가액	이억일천이백삼십삼만칠백육십원정(₩212,330,76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2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박영찬 외 1명 (2024타경35318)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07.05	2024.07.04 ~ 2024.07.05	2024. 07. 10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2 258.5x- 4	토지	129.25	-	160,270,000
	건물	120.07	건물	140.88	-	48,180,960
	제시외건물	19.7	제시외건물	19.7	-	3,879,800
합계					₩212,330,76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626번 19-1(옥봉동)	798-6 위지상 주건축 물제1동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1,100,000 x 14/45 관찰감가 1층실측 면적적용	
					1층	73.18	140.88	342,000		48,180,960
					2층	46.18				
2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일반 공유 지분일 때의 토지	798-6	대	일반상업지역	2	258.5x- 4	129.25	1,240,000	160,270,000	박기란1/4 박영찬1/4 구분소유적 공유토지 기준
					가액 2 258.5x- 4					
	[제시외 건물]						160,270,000]			
ㄱ	"	798-6 위지상	주택일부	판넬조 판넬지붕 2층소재	(18.3)	18.3	200,000	3,660,000	500,000 x 14/35 관찰감가	
ㄴ			창고 등	조적조 슬라브지붕 2층소재	(1.4)	1.4	157,000	219,800	450,000 x 14/40 관찰감가	
합 계								₩212,330,76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으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뢰한 법원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입니다.

2.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사항의 확정) 제2항 규정에 따라 대상 물건에 대한 가격조사 완료 일자인 2024년 07월 05일로 하였습니다.

나. 실지조사 및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4년 07월 05일자에 대상물건의 실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당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4.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5. 감정평가방법

가.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개별로 평가하고, 동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하나 이상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인 원가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 공시지가기준법 등을 포함하는 비교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인 수익방식 등이 있습니다.

2)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 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이 있습니다.

다. 토지의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액을 결정하되, 타 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과 시장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라. 건물의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마감재의 상태, 부대설비, 용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고, 감가수정시 공부상 경과년수와 현황 상태가 차이가 나는 경우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원가법 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 외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비교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기타 참고 사항

-기호 1 건물은 의뢰목록상 도로명 주소, 담장경계, 탐문 등을 종합하여 기호2 토지 '옥봉동 798-6' 중앙 진입도로를 기준으로 서측부분에 위치한 건물로 특정하였습니다.

-기호 1 건물의 1층 중 일반건축물 대장상 점포 17.45㎡는 조사당시 현황 영업은 하지 않는 상태로 폐문된 것으로 보이며, 1층 주택의 일부로 사용 중일 수도 있는 바 경매입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1 건물의 1층은 의뢰목록상 73.89㎡이나 현황 개략적인 실측면적은 94.7㎡인바 구조, 이용상황 등을 고려시 물적 동일성은 인정되어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기호 2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으로 매각대상인 박기란 1/4, 박영찬 1/4 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은 본건 담보 평가 전례 및 기호 1 건물 현황 위치 등에 따라 특정하여 구분소유적 공동소유로 평가하였고, 일반 공유지분 부동산으로 볼 때의 가액 즉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분비율로 면적사정한 가액을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은 구조, 규모, 이용상황 등을 고려시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별무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매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외 건물 면적은 개략적으로 실측하였으며, 감가수정시 관찰감가를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토지평가액의 산출근거

1. 대상토지의 개요

일련 번호	소재지 (진주시)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원/㎡)	비고
2	옥봉동 798-6	대	258.5* 1/2	주상용	일반상업	세장형 평지	793,100	박기란 1/4 박영찬 1/4

2.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시기준일:2024.01.01]

기호	소재지 (진주시)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옥봉동 799-3	165.3	대	주상용	일반상업	세로 (가)	세장형 평지	793,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시점수정

기 간	시점수정치
경상남도 진주시 (24.01.01~24.07.05) (상업)	2024.01.01 ~ 2024.05.31 : 0.052 2024.05.01 ~ 2024.05.31 : 0.017 $(1 + 0.00052) * (1 + 0.00017 * 35/31)$ ≈ 1.00071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자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최근 고시된 월의 자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다.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개별요인 비교

개 별 요 인 [주택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고압선, 오수처리장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일련 번호	비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비고
2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
	비교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대체로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 “2003다 38207판결(2004.05.14. 선고), ” 2002두 5054(2003.07.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기타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의 감정평가선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합니다.

2) 인근 평가 선례

[자료출처 : 감정평가정보센터 및 감정평가정보체계 등]

기호	소재지 (진주시)	용도지역	지목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비고
a	옥봉동 7***-	일반상업	대	1,420,000	2024.05.09	경매	적용
b	옥봉동 7***-	일반상업	대	1,140,000	2022.02.23	경매	
c	옥봉동 7***-	일반상업	대	1,150,000	2022.10.21	경매	본건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1) 감정평가 선례의 선정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이용상황 및 감정평가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최근의 감정평가 선례로서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본건의 적정한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평가 선례 및 사례를 선정 적용합니다.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방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선례(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격}}{\text{표준지의 가격시점 현재가격}}$ <p>* 평가선례(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격 $\text{=} \text{평가선례(거래사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p> <p>* 표준지의 가격시점 현재가격 $\text{=} \text{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p>

(3) 기타요인 보정치

- 평가 선례 a / 비교표준지 (A)

구분	단가	시점수정*1)	지역요인*2)	개별요인*3)	시산가격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감정평가 선례기준 표준지단가	1,420,000	1.00032	1.00	0.873	1,240,057	1.562
가격시점당시 표준지공시지가	793,100	1.00071	-	-	793,663	
*1) 시점수정 : 진주시 상업지역 2024.05.09 - 2024.07.05						
*2) 지역요인비교치 : 대체로 대등함(1.00)						
*3) 개별요인비교치 :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 자연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1.00	1.00	0.97	0.90	1.00	1.00	0.873
비교표준지는 전례(사례) 대비 인근환경 등 환경조건, 접면도로의 상태 및 접면너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함.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상기 감정평가전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에 적용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비교 표준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1.5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일련 번호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산출단가	시산단가 (원/㎡)	비고
2	A	793,100	1.00071	1.00	1.000	1.56	1,238,114	1,240,000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항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진주시)	용도지역	지목	면적	거래금액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가	옥봉동 8**-*외	일반상업	대	1327.7 중 663.85	1,240,000,000	1,867,891	2021.06.28	적용
	-							
나	옥봉동 8**-**	일반상업	대	138.8	252,000,000	1,815,561	2022.05.17	
	-							

상기 거래사례 중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지목 및 실제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한 사례로서 본건의 적절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를 선정 적용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사정보정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됩니다.

(사정보정치 : 1.00)

라.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자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자가변동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기호	기간	시점수정치
가	경상남도 진주시 (21.06.28~24.07.05) (상업)	2021.06.01 ~ 2021.06.30 : 0.193 2021.07.01 ~ 2021.07.31 : 0.157 2021.08.01 ~ 2021.08.31 : 0.150 2021.09.01 ~ 2021.09.30 : 0.117 2021.10.01 ~ 2021.10.31 : 0.156 2021.11.01 ~ 2021.11.30 : 0.185 2021.12.01 ~ 2021.12.31 : 0.255 2022.01.01 ~ 2022.12.31 : 1.828 2023.01.01 ~ 2023.12.31 : -0.077 2024.01.01 ~ 2024.05.31 : 0.052 2024.05.01 ~ 2024.05.31 : 0.017 $(1 + 0.00193 * 3/30) * (1 + 0.00157) * (1 + 0.00150) * (1 + 0.00117) * (1 + 0.00156) * (1 + 0.00185) * (1 + 0.00255) * (1 + 0.01828) * (1 - 0.00077) * (1 + 0.00052) * (1 + 0.00017 * 35/31)$ ≒ 1.02885

마. 지역요인비교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

(지역요인 비교치 : 1.000)

바. 개별요인 비교

일련 번호	거래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비고
2	가	0.80	0.90	0.90	1.00	1.00	1.00	0.648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가로의 폭 및 계통 등 가로조건, 접근성 등 접근조건, 인근환경 등 환경조건 등에서 열세함.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

일련 번호	거래 사례	사례 단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결정단가	비고
2	가	1,867,891	1.00	1.02885	1.00	0.648	1,245,313	1,250,000	

4.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단가의 결정

가. 시산가액

일련 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원/㎡)	비고
2	1,240,000	1,250,000	

나. 검토 및 토지 단가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건물평가액의 산출근거

1. 대상건물의 개요

일련 번호	구조	용도	연면적(㎡)	사용승인일	비고
1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등	1층 73.89 2층 46.18	1975.10.1	1층 실측면적 94.7㎡ 적용

2. 평가방법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마감재의 상태, 부대설비, 용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해당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고, 감가수정은 내용년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을 적용하되,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고려한 경우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습니다.

3. 재조달원가의 결정

가.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출처: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기준년도 2023]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원 (원/㎡)	내용 연수
06-0-05-09	점포주택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3	1,356,000	50 (45~55)
01-01-03-09	일반주택	치장벽돌조/평지붕	4	1,307,000	45 (40~50)

나. 부대설비 보정단가 결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설비종류	보정단가
전기설비, 난방설비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등은 표준단가에 포함하여 결정함.	

다. 대상 재조달원가 및 내용연수의 결정

일련 번호	표준단가	보정단가	재조달원가 (원/㎡)	내용 연수	비고
1	1,100,000	-	1,100,000	45	

라.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 결정

일련 번호	재조달원가	내용 연수	경과연수		잔존 연수	잔가율	적용단가 (원/㎡)	비고
			실제 (대장상)	유효				
1	1,100,000	45	48	31	14	14/45	34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구분		사정면적	금액	비고
토지	기호 2	129.25	160,270,000	지분
건물	기호 1	140.88	48,180,960	1층 실측면적 적용
제시외 건물	기호 ㄱ, ㄴ	19.70	3,879,800	
합 계			212,330,760	

2. 결정의견

상기의 평가전례와 거래사례가격, 기타 참고가격 자료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 수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격과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격 등을 합산한 금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이를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합니다.

- 이 하 여 백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소재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터미널, 숙박시설, 근린상가, 주택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토지로, 주상용 건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5미터내외의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기호 ㄱ 및 ㄴ 주택 및 창고 등) 이 소재하며, 토지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별무할 것으로 사료됨.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설비내역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건물의 구조

기호 1 :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

(2) 이용상태

주택 등으로 이용중임.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일부 이용상태는 관련공부, 외부관찰, 탐문 등에 의함)

(3) 설비내역

기호 1 :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개별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 건물 기호 ㄱ(주택 일부) 및 ㄴ(창고 등)이 2층에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기호 1 건물의 1층 의뢰면적은 73.89㎡이나, 현황 개략적인 실측면적은 약 94.7㎡로
상이함.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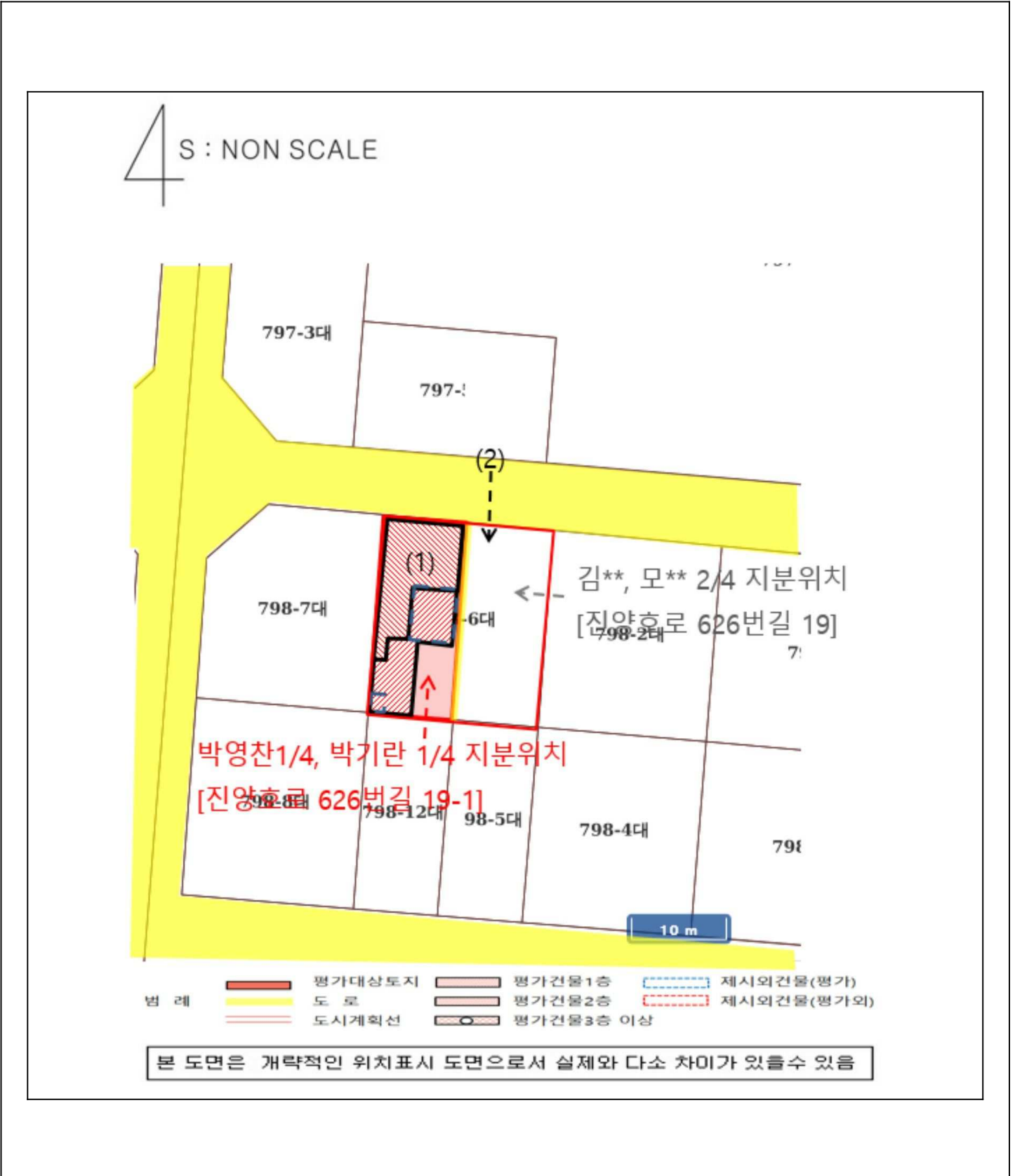
(1) 건물의 구조
(4) 부합물 및 종물

(2) 이용상태
(5)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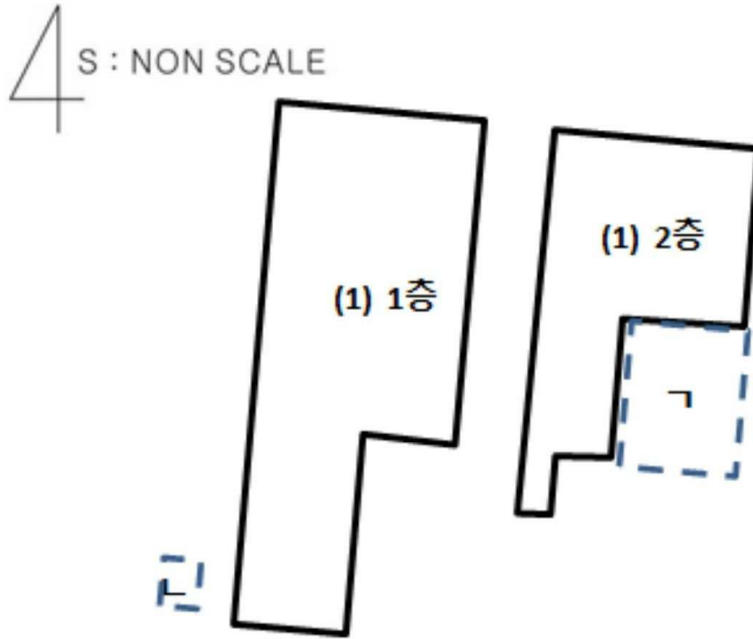
(3) 설비내역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 미상임.
- 2) 기타 : -

지 적 도



건물개황도



평가대상

기호 1 : 1층 94.7 m² (개략적인 실측면적)
2층 46.18 m² (공부면적)

<제시외 건물>

기호 ㄱ : 판넬조 판넬지붕 2층 소재 (주택일부) 약 18.3m² (개략적인 실측면적)
기호 ㄴ :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소재 (창고 등) 약 1.4m² (개략적인 실측면적)

범례		평가대상토지		평가건물1층		제시외건물(평가)
		도로		평가건물2층		제시외건물(평가외)
		도시계획선		평가건물3층 이상		

본 도면은 현장조사에 의해 표시한 개략적인 개황도로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1



